

“보호소에 머무는 것은 산산조각이 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인권침해의 온상, 외국인보호소에 기약없이 구금되었던 16인의 이야기



목차

1. 이주아동의 구금	3
2. 난민의 구금	7
3. 즉시 송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구금	13
4. 적법절차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보호제도	17

1. 이주아동의 구금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침에 나온 삶은 달걀을 두었다 점심 때 먹었어요.”

이주아동 A의 이야기

2001년생 이집트 국적자인 A는 2018년,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 이집트에 가족을 둔 채 홀로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입국 직후 A는 난민인정신청을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였으나 아동(당시 17세)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신청할 수 없다고 거절당했다. 이후에도 난민인정신청을 위해 추가로 5, 6차례 방문하였으나 갈 때마다 “어른을 데려와야 한다”고 안내를 받을 뿐이었다. A는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난민신청을 하지 못한 채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고, 결국 노상에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반에 단속되어 현장에서 긴급보호가 이루어졌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A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며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A의 상황에 대해 들어보지도 않은 채 바로 강제퇴거명령과 함께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A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고, 통역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보호실 내 같은 국적의 성인인 로부터 “비행기 예약을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만을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돈이 없다고 하자 A는 수갑이 채워진 후 철창으로 가림막이 있는 큰 버스를 타고 ‘더 큰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어디로 가는지, 수갑은 왜 찻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A는 보호실에 대해 많은 것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바깥공기를 전혀 쉴 수 없었고, 갇혀있는 곳에 햇볕도 들지 않아 추웠다는 것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식사는 거의 할 수 없었다.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는데, 보호실에서 준 음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고 통역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밥과 김치 외 다른 것은 먹지 못했다. 일주일에 한 번 생선이 나올 때면 생선을 먹었고, 아침에 나온 삶은 달걀을 두었다가 점심 때 먹었다.

보호소에서 A는 성인들 -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러시아, 파키스탄인 등 - 과 혼거 수용되었다. 대부분 4~50대로 보였다. 한 방에 25명 정도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든 점이 많았다. 잠을 자는 것도 힘들었고, 실수를 하면 욕설이 쏟아졌다. 보호소에서 준 보호복은 너무 커서 바지가 흘러내렸다. 하루에 30분정도 운동 시간이 주어졌는데, 너무 추워서 나갈 수도 없었다.. 전화는 오전 7시에서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이용 할 수는 없었다. 전화가 가능할 때만 이집트의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었다. 어느 날은 문신을 한 사람이 “죽여버린다”고 하였다. 하지만 통역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출입국

직원은 문제를 일으키면 독방으로 간다고 협박할 뿐이었다.

말을 할 수 없어서 A는 아무 말도 안 했다. 통역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고 A는 그냥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구금된 기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보호소에서 나가는 절차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었다. A는 2018년 11월, 구금된 지 한 달여 만에 “미성년자이고 난민신청예정자임을 고려하여”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받아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A는 현재까지 그 기간의 연장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

“여권이 바로 안 나와서 못 나가는데...”

여권이 발급될 때까지 구금된 10개월 영아의 이야기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TF는 조사를 위해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였다가 10개월 된 영아 B가 구금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베트남 국적의 부모는 모두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미등 록으로 지내다 단속되었고, B는 어머니와 함께 구금되어 있었다. 부모는 국내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B의 출생신고를 마친 후, 아이와 출국하기 위해 여권을 신청 후 여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 이었다.

B와 어머니는 함께 구금되어 있었으나 아버지는 남성보호동에 별도로 구금되었다. 여권이 나오는데에는 2개월이 걸렸다. 그 동안 아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한 시간으로 주어진 면회시간 뿐이었다.

“엄마, 왜 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둔거야?”

이주아동의 이야기¹

C와 D는 구금 당시 만 4세, 만 1세로 체류기간 도과로 단속된 어머니와 함께 구금되었다. 두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보호소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특히 당시 4세인 C는 하루 30분으로 주어진 외출시간마다 다시 보호실로 들어가기 싫다고 철창을 꼭 붙들고 울었다. 보호소 내 직원들은 다시 들어 가야 한다고 C를 마구 잡아당겼고, 그럴때면 C는 “아니야! 안 들어갈거야.” 라며 버텼다. 매번 10~15분은 실랑이를 벌였고, 아이는 자기를 가두지 말라며 소리치고 울었다. 때때로 C는 “나가서 친구들과하고 있고 싶어. 왜 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에 가둔거야? 내가 뭘 했길래?”라며 울었다.



구금 당시 20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D는 보호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다. 몸이 떨리고 눈이 뒤집혔는데 보호소에 상주하는 의사는 그냥 괜찮다고만 했다. 의사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도 보호소 직원은 남편이나 지인을 통해 약을 타오라는 이야 기만 반복했다. 보호소에는 아이를 위한 이유식도 없어서 아파도 모유 외에는 물만 마실 수밖에 없었다.

보호소에서 나온 후, 특히 보호소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C는 부모와도 말을 잘 하지 않았다. 이 유를 알 수 없이 자다가 일어나서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이전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바 지에 용변도 자주 본다. 구금 전과 후, C와 D는 이전과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버렸다.

¹ 2016. 9. 공익법센터 어필, 월드비전 공동제작 영상. “이주아동 구금영상: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cGuzhNvx4fU>

2. 난민의 구금

“보호소에 머무는 것은 산산조각이 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난민 E의 이야기

나이지리아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E는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남동생이 고문 끝에 사망하면서 급하게 한국으로 도망쳐왔다. 한국에서 미등록 체류 중 단속되었고, 단속 즉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 구금 중, 난민인정심사제도에 대해 알게 된 E는 구금상태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E의 종족과 종교,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국가 정황을 고려하면 E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분명하게 존재하였다. 법무부는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고, 이어 E의 이의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끝에 E는 수원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구금된 경험에 대해 E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보호소에 머무는 것은 산산이 조각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임신한 아내와 태어나지 않은 아기 그리고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으면 죽을 것이 분명한 제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제가 혹 시라도 추방된다면 제 이야기가 나이지리아 공항에서 끝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호소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서 2~3주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몇 주 동안 살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어느날, 저는 샤워하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가 심각한 어지러움을 느껴 넘어졌고, 화장실 세라믹 세면대 가장자리에 어깨를 부딪쳐 어깨가 부러졌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몇 분 동안 누워 있다가 깨어났고, 수감자들 중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제 어깨는 계속 심하게 아팠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인해 심지어 오늘까지도 손을 내리지 않고는 3~5분 이상 손을 들 수 없습니다.”

구금 1년 반만에 난민으로 인정된

난민 F의 이야기

파키스탄 국적자인 F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향했으나 제3국에서 입국이 거부, 한국으로 회송되었다. 한국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F는 경유지인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2013년) 난민법 시행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시행 직후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출입국에서는 바로 결정을 못한 채로 입국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명여권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F는 본국에서 급하게 도망쳐오는 과정에서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바로 밝혔고 이 내용을 진술 서에도 기재하였으나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화성으로 이송, 구금하였다.

보호소에서 F는 난민신청자로서 본국의 상황을 주시하기 위하여 뉴스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인터넷,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한 보호소에서는 본국의 어떤 뉴스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한국어 외 외국의 방송 또는 본국의 신문 등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묵살당하였다. 오히려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독방에 구금되기도 하였다. 2014년, 구금 기간이 1년이 넘어서자 열악한 처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F는 단식을 시작했다. 몇 주간의 단식 끝에 건강 상태가 극도로 열악해지자 난민 신청자의 신분과 건강상태 등이 고려되어 2015년, 보호일시해제로 풀려날 수 있었다.

2015년,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구금된지 1년 반만에 F는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행정법원에서 난민임을 인정받았음에도

보호일시해제가 반려된 난민 G의 이야기

이집트 국적자인 G는 난민신청 후 체류자격 연장을 위해 출입국에 방문하였는데 창구 직원으로부터 주소지가 없어 연장 접수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창구의 직원은 주소지를 확보한 이후 몇 월 며칠까지 다시 방문하면 접수해주겠다는 안내를 했다. G는 이후 주소지를 가지고 다시 방문했다가 그 자리에서 단속,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다.

강제퇴거 명령과 보호명령의 사유에 대해 법무부는 체류기간 도과와 함께 G가 이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영상을 들며 G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영상은 한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관계를 풍자한 이집트식 유머를 바탕으로 한 영상이었는데, 법무부에 의하면 '한국 여성을 성추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G가 이전에 출입국을 방문 하였다가 창구 직원으로부터 이후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포스팅에 대해서는 G가 이러한 안내를 받았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시하였다. 같은 SNS 자료를 선택적으로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G는 구금 이후에도 보호소 직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의하였는데, 항의가 이어지자 보호소에서는 앞수갑 사용 및 격리 보호, 머리보호대 사용, 뒷수갑과 '발목수갑' 사용을 통한 '새우껍기' 등을 시도하였고, "독방으로 가기 싫다고 몸부림을 쳐서 수갑을 채"우는 등 G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처우에 대해 G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인권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가 "관련법규에 근거하지 않는 종류의 물건을 사용하여 법규에서 규정 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결박하였으며, 그 사용방법도 인간으로서의 품위까지 손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고, 보호의 필요성을 넘어선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는바, 피진정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결박은 헌법 제12조 및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²

인권위의 결정 이후에도, 구금된지 1 년 반이 지난 후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했음에도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반려하였다. 결국 법원에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후에야 G 는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² 국가인권위원회 사건 19진정0360200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아이와 놀이터에 가는 길에 끌려가 바로 구금됐어요.”

난민 H의 이야기

H는 이란에서 한국에 와 살다가 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다. 한국에서 살면서 기독교로 개종 했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개종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해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으며,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미등록 상태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7시 30분 경, 아이와 놀아주기 위해 아이와 함께 놀이터로 가는 길에 갑자기 출입국에서 나왔다는 사람들 6명이 달려들었다. 막무가내로 여권을 보여달라는 직원의 요청을 거부하자 직원들이 양 쪽에 붙어 H를 끌고 갔다. 놀란 아이가 울었지만 아이를 달랠 겨를도 없었다. 버스에서 출입국 직원들은 “이란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H가 “나 기독교인인 것 이란 사람들이 다 안다. 이란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하자 서류를 들이밀며 “서류에 서명하면 보호소에 가서 도와주 겠다.”고 했다. 서류의 내용은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명해야 도와준다는 이야기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H는 즉시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끌려가 구금되었다.

보호소에서 H는 종교를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아내와 아이에 대한 걱정,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코피를 쏟고 쓰러졌다. 구금 기간이 길어지자 억울한 마음에 H는 단식을 시작했다. 이미 나빠진 건강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H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화성 외국 인보호소는 보증금을 내면 ‘출국준비를 위한’ 보호일시해제를 해 주겠다고 했다. H의 아내는 가지고 있던 금붙이를 전부 팔아서 보증금 2천만원을 준비했다.

보호일시해제를 받았지만 개종한 H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명백했다. 난민인정신청도 계속 되고 있었다. H는 난민인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으나 출입국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5개월 후, 보호일시해제는 출국준비를 위한 것이었다며, 출국을 하지 않으니 더 이상 연장해줄 수 없다고 했다. H는 다시 끔찍했던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다시 끌려가 재구금되었다.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알고 보니 이란 대사관의 정보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란 대 사관 역시 H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H는 ‘체제 중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결국 재구금된지 8개월만에,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야 구금에서 해제되었다.

난민신청 결과를 수령하러 갔다가 구금된

난민 I의 이야기

이집트 국적의 I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본국에서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고, 급하게 도망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만났다. 브로커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한국에 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난민인정 신청 후 난민신청자의 신분으로 한국에 거주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난민신청 결과를 수령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출입국에서 I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난민인정 결과가 아닌 단속반이었다. 여권에 기재된 입국 기록 중 도장 하나가 위조된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I의 출국을 도와줬던 브로커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어떤 도장이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I는 알지 못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수갑을 채워 I를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했다.

보호소에서 I는 동향 사람들을 만나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변호사를 만난 후에야 난민인정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보완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I는 난민신청서를 보완해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은 매일 “어차피 난민 인정 절대 안 돼”,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하며 압박을 주었다. 보호소 직원들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이의신청 단계에서 I는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송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3년 11개월 구금된

난민 J의 이야기

이란 국적의 J는 2005년, 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단속, 구금되었다. 이 때는 난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으로, J는 구금된 후에야 한국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종교를 이유로 난민인 정을 신청했다.

J가 송환을 거부하자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J에게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이란의 영사를 불러 G와 면담을 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란 영사와 대사관은 J가 개종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고, 본국에서의 박해 위험은 더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난민인정 불인정처분을 내렸고 대리인은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에서도 J는 난민이 아니라 판단하였다. J가 본국으로 송환된다면 박해를 당할 것임이 불 보듯 뻔해지자 대리인은 자유권규약과 고문방지협약을 근거로 유엔 인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하였다. 구금 기간이 길어지자 G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이빨이 모두 빠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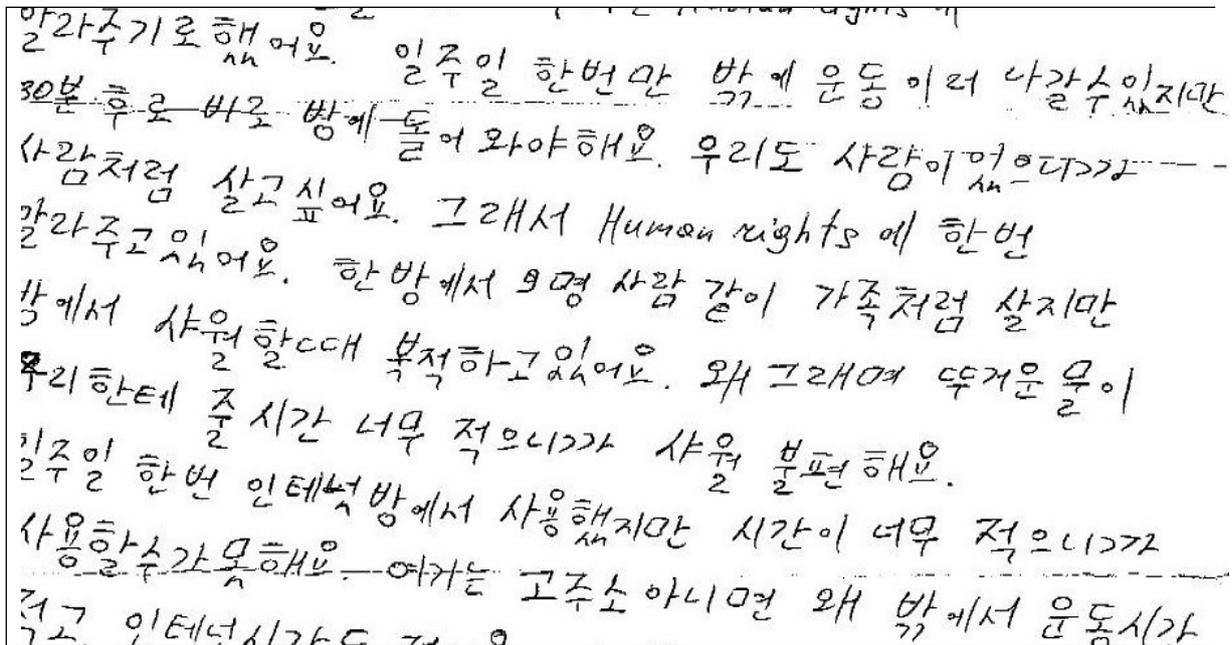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J의 건강이 악화되자 보증금 1000만원을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제안했다. J는 동향 친구들 15명에게 돈을 빌려 1000만원을 내고서야, 구금된 지 3년 11개월만에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 뿐이어서 J는 일을 할 수도 없었고, 3개월마다 보호해제 기간 연장을 받아야 했다.

긴 기다림 끝에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4년 3월, J의 손을 들어주었다. 기독교로 개종한 J가 강제 송환된다면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J를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2005년 12월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지 8년 4개월만이었다. 법무부는 2014년 4월, 강제 송환명령을 철회하고 J를 난민으로 인정하였다.

3. 즉시 송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구금

코로나19에 대한 조치로 국적국 입국이 불가능하던 베트남 사람들의 이야기

코로나 확산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20. 3. 22. 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자국민에 대해서도 항공편 제한을 두어, 긴급한 사안으로 귀국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입국 제한 조치를 하였다. 이에 대사관에서 입국자의 명단을 수집,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의 경우 귀국 의사가 있어도 베트남 입국이 불가능했다.



아래로 해주세요. 일주일 한번만 밖에 운동이러 나갈수 있지만
30분 후로 비록 밖에 들어와야해요. 우리도 사랑이 많으니까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Human rights 에 한번
간다고 있어요. 한방에서 9명 사람 같이 가족처럼 살지만
방에서 샤워할때 부족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딱겨운 목이
무리한테 줄 시간 너무 적으니까 샤워 불편해요.
일주일 한번 인터넷방에서 사용해서지만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사용할수가 없어요. 여자는 고주소 아니면 왜 방에서 운동시간
간 인터넷시간도

베트남 국경이 완전히 폐쇄된 결과, 2021년 1월 말에는 120명이 넘는 베트남 국적자들이 떠나지 못한 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견디다 못한 이들은 시민사회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다음과 같이 도움을 청했다.

“기관의 지도자 및 책임자 분에게 우리를 살피주길 청하며 이 글을 적습니다. 저를 비롯해 다른 베트남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화성 보호소에 오랫동안 구류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생활 조건은 열악하며 스트레스로 많이 힘이 듭니다. 부디 기관의 책임자 및 지도자들께서 우리가 가족과 사회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조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편의 제공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도 몰랐던 27년 전 여권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1년간 구금된 60대 노인의 이야기³

중국 국적자인 K는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5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고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 법무부가 K의 여권이 위명여권이라 판단한 이유는 1989년 K가 입국 당시의 생일(1952년 11월 25일)과 현재 여권 상 생일 (1952년 1월 25일)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K는 1989년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에 처음 왔다. 이후 중국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다 남편 사망 후 2007년부터 한국 입국해 외삼촌과 함께 거주했고, 2014년 영주권을 신청했다. 신청 시 1989년 한국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사진을 제출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1989년 여권의 생일과 현재 여권의 생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 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면서도 여권 상 생일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고,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도 모든 서류를 다 구비해 제출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주권 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다가 바로 구금되었다.

서울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담당자는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종이를 주며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라”라고 했다. 1989년에 한국에 왔었다는 내용이였다. 시키는 대로 하자 출입국 직원은 갑자기 반말을 하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고, 옷을 주며 갈아입으라고 하였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외삼촌이 그 날 바로 와서 면회를 요청했지만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K는 오후 3시경 바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다. 영주권 심사를 받는다고 알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간지 5시간만이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K는 약 1년간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다. K는 1989년 당시 서류는 중국이 여권전산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이라 수기로 기입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잘못 적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1989년 당시 중국 거주민증과 2007년 서류 등 모든 서류에서 생일이 1월 25일로 기재된 것을 증거로 제출했다. 1989년 여권에 생일이 어떻게 적혀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정부가 발급해준 대로 사용했을 뿐이며, 당시 여권은 만료, 폐기되어 실제로 어떤지 확인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³ 머니투데이, “나도 몰랐던 27년전 여권 때문에”... 1년째 ‘구금’중” 2016. 8. 4.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80309578234616>

서는 중국 정부의 확인이 필요한데, 강제퇴거명령 즉시 중국 대사관 측에 사실관계를 입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개인의 신원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답할 뿐이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중국 정부에 위명여권과 관련해 공문을 보내도 답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확인이 힘들다'면서도 '위명여권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K를 1년여 기간 동안 구금했다.

결국 법원은 K의 손을 들어 주었고,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은 모두 취소되어 K는 1년만에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60대 중반 노인이 1년간 보호소에서 15명이 넘는 사람과 한 방에 구금되어 지내면서 겪은 고통,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도 없던 긴 밤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았다.

“송환될 수 있는 국가가 없는데 어디로 가나요”

무국적자의 이야기⁴

중국 국적자였던 L은 1995. 8.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하고 당시 국적법⁵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L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중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한편, L의 친딸이 특별귀화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L이 혼인신고 시 생년월일이 다르게 표기된 호구부 등의 서류를 제출했으며,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이 허위로 기재된 사증에 의해 한국에 입국했음이 확인되었다.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허위 인적사항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이며,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임을 전제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을 하였다. 보호 처분에 따라 L은 구금되었다. 중국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 즉시 중국 국적은 상실 되었으며, 따라서 L은 한국 국적 외 다른 국적은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송환이 가능한 국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2012년, 허위 생년월일로 혼인신고 및 사증 발급을 진행한 것은 손쉽게 사증을 발급받기 위한 것일 뿐으로, 진정한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혼인생활을 유지 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한 혼인이며, 진정한 의사합치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서 당시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처분 9개월만에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를 상대로 행해진” 보호처분이 취소되었다.

⁴ 수원행정법원 2012. 9. 20. 선고 2012구합73 판결.

⁵ 1997년까지 「국적법」은 외국인 여성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었다. 중국의 국적법은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면서 결혼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중국 국적은 즉시 상실한다. 이러한 사유로 한국에서의 혼인이 ‘위장결혼’이라는 판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취소되고 법적 무국적자가 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유엔난민기구 “대한민국 내 무국적의 현황” 보고서, 2013)

4. 적법절차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보호제도

가혹행위 사실이 밝혀져도 가해자의 감시 하에 있어야 했던 고문 피해자의 이야기

난민신청자로 거주하던 M은 체류자격을 갱신하지 못하고 지내던 중, 근무지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항의를 하다 사업주의 신고로 단속, 즉시 구금되었다. M은 본국에서부터 박해로 인한 PTSD로 오랜 기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왔다. 이런 점을 보호소 직원에게도 전달하여 약을 반입했기 때 문에 출입국 당국 역시 M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 내에서는 M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학대가 이어졌고, 4개월동안 총 4차례의 '새우껍기' 고문이 자행되었다. 이로 인해 M의 정신질환이 악화되었고, M은 계속해서 병원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진료는 모두 거부되었다. 지속적인 학대와 악화되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청구한 보호일시해제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보호일시해제 신청의 과정에서 M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 청문 또는 면담 등의 절차도 없었고, 기각의 사유 역시 구체적으로 통지되지 않았다. 새우껍기 사건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이후, 내부 진상조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통해 법무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한 후 재차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했으나 이 때에도 법무부는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달 후, 한번 더 보호일시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차례의 권고 이후에도 법무부는 '본인들이 지정한 병원에서 보호일시해제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아오지 않는 이상 보호일시해제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약 4 달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M은 고문의 가해자이기도 한 외국인보호소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구금되어 있어야 했다.

“저는 범칙금을 내러 왔다고요.”

범칙금 납부를 위해 줄 서있다 구금된 난민신청자의 이야기

N은 난민신청 후 정시에 체류자격 연장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도과 상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를 방문, 이에 대해 상담 후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N은 행정사에게 동행을 요청했고,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줄을 서 있었다. 줄을 서 있는 도중에 갑자기 출입국 직원이 와서 사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행정사는 직원에게 범칙금을 납부하러 왔다는 사정과 N의 난민신청 사유 등을 설명하였으나 직원은 이야기를 더 듣지 않고 바로 단속 업무를 진행했고, N은 즉시 구금되었다.

‘있지만 없는 사람’

보호명령 집행정지 후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O의 이야기

O는 방글라데시에서 야당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박해를 받았고 2017년,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도피해 바로 난민신청을 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비자신청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며 O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내렸고, O는 즉시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 비자신청 서류에 확인이 어려운 사실이 기재된 것은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급하게 도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과정에서 난민신청자로서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O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O는 취소소송 진행 중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O의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O는 6개월간의 구금생활 끝에 간신히 석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석방 이후에도 O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O는 난민신청자로서의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외국인등록증도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되었다면 처분 이전의 체류자격 (난민신청자 자격인 G-1-5)이 다시 부여되는 것이 타당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O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체류자격이 없는 O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즉 취업허가 역시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O는 결국 일을 할 수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은행계좌를 만들 수도 없었고, 심지어 핸드폰도 개통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을 부여 받지도, 외국인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 본인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보고할 일도 없었다. 현재 행정당국은 O의 거소나 연락처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O는 있지만 없는 사람인 투명인간과 다를 없는 것이다.

“재판 7년만에 법정에서 모국어로 말했어요.”

4년 8개월, 최장기간 구금된 난민신청자의 이야기⁶

난민신청자 P는 2011년, 토착종교집단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받아 한국에 왔다. 한국에 입국 후 바로 난민신청을 하려 했지만 나이지리아 부족어인 이보어만을 할 수 있었던 P는 통역을 구하지 못 했고, 언어의 벽에 부딪쳐 바로 난민신청을 하지 못했다. 수소문한 끝에 어렵사리 동향사람을 만나 통역을 부탁하려 했지만, 통역을 구하다 체류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불심검문을 당하고 바로 다음날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

P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생활은 감옥과 같았다. 모포 두 장, 매트리스 하나, 베개 하나, 수감복만이 할당되었고, 한 방에서 12~18명이 잠을 잤으며, 오전에 30분간 야외운동을 하는 것 외에는 하루 종일 내부에서만 생활해야 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보니 다툼도 빈번 했다. 모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도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관리 인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를 지를 뿐이었다. P는 외국인보호소를 찾은 인권단체 사람들과 수감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해 2013년, 드디어 난민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난민신청은 시작일 뿐이었다. 첫 난민신청 이후 3개월만에 불인정 통보를 받았고, 이의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법무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P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이 시작되었으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로 P는 패소하였다. P가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나이지리아 땅이 넓고, 기독교 비율이 높은 다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곳으로 옮겨가서 거주하면 된다’는 것이다. 소송은 2016년까지 이어졌다.

4년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는 과정에서 P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4년이 넘는 기간동안 그는 외국인보호소 담장 너머로는 단 한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다. 그의 더듬거리는 한국어도 외국인보호소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들을 통해 배운 것이었다. 2016년 6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증금을 내고서야 간신히 보호일시해제를 받아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2011년 구금된지 4년 8개월만의 일이었다.

⁶ 한국일보, “7년의 재판, 10년간의 좌절 “살기 위해 한국 왔는데 왜...””, 2021. 2. 15.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011170002978?t=20210825015119>